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일관된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법 일부 개정청원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년 08월 04일

청 원 인

성 명 : 이정민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성명 : 이정민
건명	일관된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 개정청원안
소개년월일	2019년 8월 4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이정민 외 15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7회 정기회의 외교통상위원회 의원입니다. 제17회 정기회의 & 청소년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일관된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안>입니다.</p> <p>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준비위원회가 존재하였으나 성과가 부진하였고, 통일부와 기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의 중복이 2016년의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권의 교체로 인한 급작스러운 폐지로 통일 정책 추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p> <p>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중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문제점 대책에 대한 기능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문제점 대책에 대한 기능의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이 일부 개정 법률 청원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p> <p>청소년 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다음과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 2조 4호의 신설)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제2조(기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및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통일 과정 및 통일 후에 예상되는 문제 예측 및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생략)</p> <p>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1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p> <p>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p>	

청원서

1. 제안이유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 정부를 위한 기본방향, 통일 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 연구,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 통일 준비를 위한 정부 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간 협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는 설립 3년 만에 정부의 교체와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통일에 관한 연구와 투자는 정권의 교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며, 일관되고 효율적인 통일 준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일준비위원회의 부재로 인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기관을 향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 2조에 따른 기능에 관한 법률에 실질적인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권의 교체와 통일 준비 기관들의 설립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통일 준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 2조(기능)에서 위 기관의 기능에 관한 법률에는 실질적인 통일 과정에서와 통일 후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예측과 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 분석·진단 결과보고서」 통계에서 해당 회의의 주 업무인 자문과 건의는 11.8%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 업무와 목적달성이 잘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많은 통일 관련 기관들이 법률에 의한 활동이 아닌 주도적인 규칙 들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기구가 주도하여 통일에 관한 연구를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이용하여, 이 기관의 활동을 법으로 제정하여 실행력과 강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 20조(회의)의 현 내용을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1년에 한 번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라고 개정한다면,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대외 상황에 더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주요골자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및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통일 과정 및 통일 후에 예상되는 문제 예측 및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생략)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1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p> <p>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p> <p>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생략)</p> <p>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p> <p>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p>	<p>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p> <p>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p> <p>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통일 과정 및 통일 후에 예상되는 문제 예측 및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생략)</p> <p>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1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p> <p>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p>

3. 기대효과

본 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동안 수행하지 못하였던 기능들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루오지 않았던 통일 관련 문제들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일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해오던 대통령 자문 및 건의 기능에 더하여 주체적으로 해당 사안들을 조사하는 기능까지 갖게 되어 정부의 통일 정책 추진에 있어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만나는 횟수를 늘려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교류한다면, 그 속에서

통일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통일 정책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을 추가하여 개정한다면, 지속적으로 해 오던 연구를 바탕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자문 및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회의로 변화하는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은 지속해서 통일과정과 이후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위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우리 민족이 남북한의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원인 성명 : 이정민

청원인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청원인 전화번호 :